

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문화체육과)

의안번호	제168호
제 출 자	강수진 의원 외 14명(2023. 8. 21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일상생활로 바쁜 현대인들의 운동부족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스포츠클럽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신체, 정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지원 및 범위, 지원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지도·감독 및 환수, 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스포츠클럽법」,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3. 8. 21. ~ 2023. 8. 26.

4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스포츠클럽법」 제3조¹⁾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²⁾에 따라 스포츠클럽³⁾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클럽의 지원을 통해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,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조에서는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,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2조에서는 “스포츠클럽”, “지정스포츠클럽”, “공공체육시설” 등의 용어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법 제15조제1항⁴⁾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

1)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2) 제9조(선수의 육성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

2. 수준별·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

3.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·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3) 성북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수 : 38개, 클럽 수 : 357개, 동호인 수 : 12,461명

4) 제15조(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

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.

-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회계관리를 위해 회계책임자를 지정·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
-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·감독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음.

○ 집행부측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대회를 개최한 협회(32개 종목)의 소속 클럽수(340개 클럽)의 10% 기준으로, 대회개최·참가에 따른 지원금은 1,700만원(클럽별 50만원 이하 지원, 1회 한정)이며,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에 소재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,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, 체육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 및 위임 사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목적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